

##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02월 06일

효문동장 인

세대주 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최 *지	최 *지 2001-11-01	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5길 (연암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2-06
최 *지	박 *숙 1959-02-18	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5길 (연암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2-06
최 *지	최 *우 2016-06-16	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5길 (연암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2-06